

2017
전자문서 컨퍼런스

전자문서 효력: 전자문서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정진명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목차

- I. 머리말
- II.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정의
- III. 전자문서의 유효성
- IV.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 V. 전자화문서의 보관·폐기
- VI. 맺음말

1. 머리말

- 전자문서법(2012년 개정):
 - 전자문서 등 관련 제도 보완
 -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한 제도 추가
- 개정 전자문서법의 문제점
 - 보완 및 추가되어야 할 사항의 일부만 법률개정에 반영
 - 법률개정에 반영되지 못한 논의는 재검토 필요
- 전자문서법 개정 방향
 - 전자문서 개념 재정립
 - 전자문서 효력 구체화
 - 전자적 의사표시와 전자화문서의 진정성 확보 방안 모색

II.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정의

1. 전자문서의 정의

(1) 문제의 소재

- 전자문서법 제2조 제1호: “전자문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 a.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인 ‘전자화문서’와 구분할 수 없음
- b. 전자문서 표지의 하나인 ‘정보처리시스템’이 개념정의에서 다시 전자문서를 기술하여 순환논리의 모순 발생
- c. 전자문서 정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전자문서’라고 하고 있어 ‘정보’와 ‘문서’를 혼동케 하고, 디지털콘텐츠와 구분을 어렵게 함
특히 전자거래상 전자문서는 ‘전자적 의사표시’를 말하는 반면,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전자적 형태의 ‘서류’를 의미하므로 ‘정보’ 부적합

II.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정의

1. 전자문서의 정의

(2) 학설 및 판례의 태도

- a.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전자문서법 제2조 제1호의 견해와 동일
- b.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컴퓨터 기타 정보처리장치간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전송, 처리, 보관되거나 출력된 문서형식의 자료를 말한다.”
- c.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수신, 저장되며, 문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적 정보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되어 있는 것”
- d. “컴퓨터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이 전자적 형태로 기록된 정보를 담고 있는 유형물로서, 사후에 문서의 형태로 출력 또는 재현될 수 있는 물건”
- e. “컴퓨터 등 연산작용에 의한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생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될 수 있고, 생성 또는 송·수신시의 형태로 보존되어 사후적으로 관람 가능한 형태로 재현될 수 있는 전자적 기록”

II.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정의

1. 전자문서의 정의

(2) 학설 및 판례의 태도

[대판 2012. 3. 29, 2009다45320]

“전자문서나 전자투표는 그 자체로서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에 불과하여, 문자나 기타 가독적 부호에 의해 계속적으로 의사나 관념이 표시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문서’ 또는 ‘서면’ 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II.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정의

1. 전자문서의 정의

(3) 소결

- a. 현행법상 전자문서 개념 명확화
 - b. 전자문서 표지의 하나인 ‘정보처리시스템’ 용어 삭제 또는 개정
 - c. 전자문서의 ‘정보’ 라는 표지를 ‘데이터’ 또는 ‘기록’ 으로 개정
-
- 전자문서법 제2조 제1호: “전자문서” 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II.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정의

2. 전자거래의 정의

(1) 문제의 소재

- 전자문서법 제2조 제5호: “전자거래” 를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 전자거래 개념을 전자문서와 연계하고 있음

- 전자거래는 전자문서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의 전자적 방식과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문서 이외의 방식과 형태에 의한 전자거래도 법적 효력 있음

- 전자거래는 전자적 형태의 의사표시를 통해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의미
=> 전자거래 개념에 따르면 거래의 이행만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경우도 전자거래에 해당하게 되어 전자거래 개념 재정립 필요

II.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정의

2. 전자거래의 정의

(2) 학설 및 판례의 태도

- ‘전자거래(electronic transaction)’ 는 전자계약을 포괄하는 개념
=> 전자거래는 반드시 상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라는 용어와 구분됨
- 전자거래는 사적 거래에 한정하지 않고 사법과 공법에 공통으로 적용
=> 전자문서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거래 개념 확장 필요

II.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정의

2. 전자거래의 정의

(3) 소결

- 전자거래와 전자문서 개념 연계 불필요
=> 전자거래와 관련된 규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전자문서와 관련된 규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의 구분 필요
- 전자거래는 전자적 형태의 의사표시를 통한 계약체결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전자문서는 종이문서를 전자기록으로 대체하는 것을 추구
- 전자문서법의 전자거래 개념정의: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적 방식으로 체결하는 거래” 라고 개정하여 전자문서 개념과 연계 단절 필요

III. 전자문서의 유효성

1. 전자문서의 효력

(1) 문제의 소재

- 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 전자문서는 원칙적으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인정

a.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에 대하여 소극적인 비차별적 효력만 천명

=> 종이문서와 동가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객관적인 형식요건 제시 필요

b.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고 되어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의 해석이 문제됨

=> 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거나 또는 구체적 사안에서 법률해석을 통하여 전자문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오인될 수 있음

Ⅲ. 전자문서의 유효성

1. 전자문서의 효력

(1) 문제의 소재

c. 제4조 제1항은 개별법에서 서면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문서가 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만한 기준이나 요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법원의 해석을 통하여 확정될 수밖에 없음

=> 전자문서가 '**문서로서의 효력**' 을 가질 것인지의 여부가 제4조 제1항에서는 불명확하므로 개정 필요

d. 제4조 제3항은 개별법에서 특별규정을 두는 대신 일반법인 전자문서법에서 특별규정을 둬으로써 제3항 별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의 효력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취지로 오인될 소지 있음

=> 제4조 제3항은 전자문서의 활성화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이용자인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제 필요

Ⅲ. 전자문서의 유효성

1. 전자문서의 효력

(2) 학설 및 판례의 태도

[대판 2012. 3. 29, 2009다45320]

- 사안: 관리단집회 결의사항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투표에 의해 합의한 경우에 이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서면합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판결: “전자문서나 전자투표는 그 자체로서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에 불과하여 문자나 기타 가독적 부호에 의해 계속적으로 의사나 관념이 표시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문서’ 또는 ‘서면’ 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법률에서 명문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 이상, 전자문서 등 전자적 형태의 기록으로 위 조항의 ‘서면’ 을 대신할 수는 없다.”

- 의미: 전자문서를 전자거래 수단으로만 이해하고, 전자문서의 효력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만 인정

=> 전자문서 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인정

Ⅲ. 전자문서의 유효성

1. 전자문서의 효력

(2) 학설 및 판례의 태도

[대판 2015. 9. 10, 2015두41401]

- 사안: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에 있어 전자문서가 서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판결: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

- 의미: 전자문서의 적용범위가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된다는 개정 전자문서법 제3조를 근거로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의 유효성 인정
전자문서법 제4조 제3항 별표의 성격을 예시적으로 해석하여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에 전자문서 효력 인정

=> 전자문서법 제4조를 전자문서에 대한 소극적인 비차별성을 반영하여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해석하므로 전자문서법 취지에 부합

Ⅲ. 전자문서의 유효성

1. 전자문서의 효력

(3) 소결

a. 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의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전자문서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유엔 전자계약협약 등 관련 조약이나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부합하고, 현실적으로도 합리적인 규제방식임

- 법령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전자문서의 법적 유효성을 부인하는 경우는 없음
- 특정 법률이나 특정 절차에서 전자문서가 아닌 종이문서나 또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종이문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전자문서 자체의 법적 효력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률에 따른 법적 효과만 부인됨

- 제4조 제1항: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Ⅲ. 전자문서의 유효성

1. 전자문서의 효력

(3) 소결

b. 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의 효력을 소극적인 비차별적 효력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라는 예외규정이 없어도 해석상 전자문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

- 전자문서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 고 적용범위를 규정.

제4조 제1항에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라는 예외사유를 규정할 필요 없음

=> 제4조 제1항에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삭제

Ⅲ. 전자문서의 유효성

1. 전자문서의 효력

(3) 소결

C. 2012년 전자문서법 개정으로 동법의 적용범위가 모든 전자문서로 확대되어 전자문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다른 개별법상의 문서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전자문서의 형식요건 및 전자적 방식의 문서에 대한 배제사유를 신설한다면 제4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

=> 전자문서의 효력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법을 정비하여 전자문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법에 특별규정을 두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Ⅲ. 전자문서의 유효성

2. 전자문서의 서면성

(1) 문제의 소재

-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의 개념정의와 효력규정을 두고 있음
- 전자문서의 개념정의와 효력규정만으로 전자문서가 종이문서를 대체하는 효력을 가지는지 의문
-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 달리 무형적인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 되어 있어 그 정보가 재현되기 전에는 문서성을 인정하기 곤란
 - => 전자문서의 효력규정에 전자문서의 형식요건을 신설하여 전자문서가 법령상의 서면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Ⅲ. 전자문서의 유효성

2. 전자문서의 서면성

(2) 학설 및 판례의 태도

- 전자문서의 서면성을 인정하는 입장:

- a. 전자문서 그 자체는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없지만 사람의 사상이나 의사의 표시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종이문서와 같은 기능
- b.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는 문서로 재현 가능
- c. 재현된 문서와 무형적인 디지털메시지 형태의 정보는 일체불가분성

- 전자문서의 서면성을 부정하는 입장:

- a. 전자문서는 자성체 그 자체에 불과하고 그 특성상 흔적없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종이문서와 같은 가치 부여 곤란
- b. 전자문서는 무형적인 디지털메시지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문서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처리시스템 도움 필요
- c. 전자문서가 출력되어 문서로서 재현될 수 있다는 것과 전자문서 자체가 문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

Ⅲ. 전자문서의 유효성

2. 전자문서의 서면성

(2) 학설 및 판례의 태도

- 초기판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의 ‘서면’에 전자문서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 전자문서의 서면성 부정

- 최근판례: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면”,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

=> 이메일에 서면성 인정

Ⅲ. 전자문서의 유효성

2. 전자문서의 서면성

(3) 소결

- 전자문서의 형식요건은 전자문서가 서면으로 요구되는 경우에 필요한 요건이므로 그 요건을 객관적으로 규정할 필요 있음

- 전자문서법 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성) “법령에서 서면을 요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본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나중에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형태로 재현될 수 있도록 보존되어 있을 것

III. 전자문서의 유효성

3. 전자문서의 원본성

[1] 문제의 소재

- 서면요건 + 원본요건 -> 전자문서의 효력 발생
- 전자문서법은 원본요건에 관한 규정 없음
 - => 개별 법령에서 문서의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자문서의 원본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 있음

[2] 학설과 판례의 태도

- a.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1항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
 - => “전자문서를 원본으로 볼 수 있는가?” 의 문제 발생
- b. 전자문서의 무결성이 인정되고 복제한 전자문서가 원본과 동가치의 것이라면 원본으로 볼 수 있음

III. 전자문서의 유효성

3. 전자문서의 원본성

(2) 학설과 판례의 태도

-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
- ①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② 사본을 원본의 내용으로 하는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사본으로 원본 대체 불가
-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한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음

III. 전자문서의 유효성

3. 전자문서의 원본성

(3) 소결

- 종이문서를 전자화한 후에 폐기한 경우 전자화문서의 원본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전자문서의 원본성에 관한 규정 필요
- 전자문서의 원본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의 열람가능성과 무결성에 관한 신뢰할 만한 보장 필요

3. 전자문서의 원본성

[3] 소결

- 전자문서법 제4조의3(전자문서의 원본성) “법령에서 원본의 제출 또는 보관을 요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전자문서로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1. 전자문서가 이용될 수 있고,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최종적인 형태로 생성되어 변경되지 않고 재현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관되어 있을 것
 3. 이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란 전자문서가 완전하고 변조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는 것을 말한다.”

IV.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1. 전자문서의 송신시기

[1] 문제의 소재

- 전자문서법 제6조 제1항: 컴퓨터에 의하여 생성된 표시가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 고 규정

=> 이는 민법의 발신주의 원칙과 부합하지 않음

=> 전자문서의 전송과정상의 모든 위험을 송신자에게 부담

[2] 학설 및 판례의 태도

a. 민법상 ‘발신’에 대한 개념과 부합하지 않음

b. 송신이 수신과 같은 시점에 이루어지는 문제 발생

c.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지배하에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벗어나지 않은 경우의 문제 해결 불가

IV.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1. 전자문서의 송신시기

[3] 소결

- 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발신된 때에 계약이 성립되므로 전자문서의 송신시기가 문제됨
- 전자문서의 송신시기는 표의자를 기준으로 삼아 전자문서가 표의자의 지배영역을 벗어난 시점으로 정하여야 할 것
- 전자문서법 제6조 제1항 “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전자문서를 송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벗어난 때 송신된 것으로 본다.”

IV.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2. 전자문서의 수신시기

(1) 문제의 소재

- 전자문서법 제6조 제2항 제1호 :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지정되지 않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경우-> 수신자가 출력한 때

=> 전자문서의 출력은 의사표시의 요지에 해당하므로 민법상의 '도달' 과 일치하지 않음

=> 수신자가 전자문서가 수신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내용을 열람하지 않은 이상 해당 전자문서는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됨

=> 수신자의 정보처리시스템에 필터나 방화벽 같은 보안조치가 취해진 경우에 전자문서의 부도달의 위험을 작성자가 부담하게 됨

IV.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2. 전자문서의 수신시기

[2] 학설 및 판례의 태도

1) 학설

a. 전자문서의 효력발생에 관하여 도달주의 원칙 반영한 것

<= 우리 민법 제531조는 격지자 간의 계약체결에 대하여 발신주의 원칙을 취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게 됨

b. 전자문서의 도달시기를 규정한 것

=> 전자문서법 제6조 제2항은 전자문서가 수신자에게 언제 도달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기술적 측면의 기준만 제공하려는 것이므로 전자문서의 효력발생시기와 전혀 관련 없음

2) 판례: 전자문서의 수신시기에 대하여 판례는 아직 형성되지 않음

IV.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2. 전자문서의 수신시기

(3) 소결

- 의사표시의 “**도달**” 이라 함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영역으로 들어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생겼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전자문서법에 따르면 수신자의 정보처리시스템에 필터나 방화벽 같은 보안조치가 취해진 경우 전자문서 소멸의 위험을 작성자가 부담. 이는 수신시기에 대한 규정이 전자문서의 소멸의 위험을 공평하게 할당하기 위한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 => 전자문서의 도달여부도 민법이론과 부합되게 개정할 필요

IV.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2. 전자문서의 수신시기

(4) 소결

- 현행 전자문서법은 일정한 경우에 전자문서가 수신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이를 독립적인 개념으로 개정할 필요

현행 전자문서법 제2항 :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본다.”

=> “**본다**” -> “**추정한다**”

- “전자문서가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 때” 수신으로 봄
 - ①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령할 수 있고,
②수신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문서가 수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 전자문서가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
- =>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 때**” -> “**검색 또는 출력한 때**”

IV.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3. 전자문서의 수신확인

(1) 문제의 소재

- 전자거래는 전자문서의 상호 교환으로 이루어지므로 작성자가 수신자에게 전자문서를 송신하면서 수신자에게 자신이 송신한 전자문서에 대한 수신확인 통지를 요구할 수 있음

=> 작성자가 수신자에게 부과한 수신확인 통지의 법적 성질과 작성자가 수신자에게 송신한 전자문서의 효력발생 시기가 문제됨

(2) 학설 및 판례의 태도

- a. '수신확인'은 청약의 '내용'에 조건을 붙인 새로운 청약으로 볼 것이 아니라 승낙의 효력발생시기만 수신확인의 도달시까지 연기하려는 것
- b. 수신확인 통지는 전자문서의 효력발생에 관한 정지조건

IV.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3. 전자문서의 수신확인

(3) 소결

- 전자문서법은 수신확인 방법 및 수신확인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 => 이를 민법에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그대로 수용은 부적절함
- 청약에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붙이거나 청약이 이미 도달까지 이루어진 시점에서 그 수신을 '철회' 한다는 것은 민법이론으로 설명 곤란
- 전자문서법 제9조 제2항에서 “전자문서의 송신을 철회” 한다는 것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작성자가 수신확인 통지를 받지 못할 경우 나중에 조건 없이 전자문서의 송신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신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수 있음
 - => 계약법 원리와 부합하지 않는 제9조 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V. 전자화문서의 보관·폐기

1. 전자화문서의 보관

(1) 문제의 제기

- 전자화문서의 보관요건은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하고, 전자문서의 보관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함(제5조 제2항)

=> 전자문서의 보관에 관한 규정은 체계적인 사고 하에 통일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만들어진 결과 법률 규정의 체계성이 없음

V. 전자화문서의 보관·폐기

1. 전자화문서의 보관

[2] 소결

- 전자화문서를 넓은 의미의 전자문서로 파악하는 경우에 전자문서의 보관과 전자화문서의 보관에 동일한 법적 효력 부여 필요
- 전자적 환경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전자문서 보관요건 규정
- 전자화문서의 보관요건에는 전자화대상문서와 동일성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규정 내용 명확화

=> 전자문서법 제5조 제2항을 제5조 제1항 4호로 이동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전자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의 경우에는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 전자화문서의 보관·폐기

2. 전자화문서의 폐기

(1) 문제의 제기

- 전자화문서는 본질적으로 사본이므로 상대방의 이의제기시 원본과의 동일성 입증 요함

- 전자화대상문서의 폐기 여부가 불분명해져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의 이중 보관에 따른 보관비용이 증가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저해됨

=> 전자화문서를 법령에서 정한 신뢰할 수 있는 보관시스템에 보관할 경우 전자화대상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서 명시 필요

V. 전자화문서의 보관·폐기

2. 전자화문서의 폐기

(2) 학설 및 판례의 태도

- 전자화문서는 전자화대상문서의 사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전자문서의 특성상 위조·변조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 자체를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 증명력이 부정됨

=> 전자화대상문서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 ①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의 **동일성**
- ② 전자화문서 생성 이후 **무결성**의 요건
- ③ 전자화문서의 내용에 대한 **진정성**이 보장되어야 함

V. 전자화문서의 보관·폐기

2. 전자화문서의 폐기

(3) 소결

- a. 전자화문서의 동일성 인정 여부는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전자화문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을 통하여 확보 가능
- b. 전자화문서의 무결성은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보를 위한 요건과 달리 전자화문서의 보관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함
- c. 전자화문서의 진정성은 전문법칙에 따라 판단되므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화문서에 국한하여 그 원본을 폐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제31조의6(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 제2항: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화문서는 전자화대상문서에 갈음할 수 있고, 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는 폐기할 수 있다.”

VI. 맺음말

- 전자문서의 사용범위 확대로 전자문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법률에 반영될 필요 있음. 선진적인 전자문서법의 구체화를 위한 방향설정 필요

a. 전자문서의 이용 활성화: 국민의 법감정이나 거래현실에서 종이문서의 활용이 불가피한 분야는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개정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고, 법제도의 실효성 확보

b. 전자문서와 전자거래의 구분: 전자거래에 관한 규정은 민법에 수용하여 전자거래를 일반규정화 하는 반면, 기존의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함

c. 전자문서의 형식요건 및 전자화대상문서의 폐기에 대한 규율 명확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과 전자화문서의 이중보관 문제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률개정 필요



Thank you

감사합니다.감각